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 대학생 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발신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수신 : 서울특별시교육청

제목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의 서명요청기간에 관한 질의

날짜 : 2011. 4. 25(월)

문의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배경내(017-214-3550)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의 서명요청기간에 관한 질의

1.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하여 2010. 10. 27.부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을 진행해 왔습니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본문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서명요청기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그 취지를 공표한 2010. 10. 27.부터 6개월이 되는 2011. 4. 26.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별첨 대표자 증명서 참조).

4.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단서는 "다만,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은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현재 중구청장과 강남구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위 보궐선거 기간에 해당하는 14일만큼 서명요청기간도 연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가. 대표자 증명서에 기재된 서명요청기간 "2010년 10월 27일부터 2011년 4월 26일까지"를 수정하는 절차
나. 변경된 서명요청기간
다. 청구인 명부 제출 시기 및 이후 절차

* 별첨. 대표자 증명서

2011년 4월 25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별첨]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홍 세 화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주 소	서울특별시 (전화번호 [redacted]		
청 구 종 류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청구		
서명요청기간	2010년 10월 27일부터 2011년 4월 26일까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교 육 감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